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800
------	-----

2012. 6. .  
재정경제위원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6월 8일,  
조상호 · 김인호의원(찬성의원 26)명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2일

다. 상정결과 :

###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】

-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(2012.6.26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조상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국민생활의

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·운영하는 농수산물공사 경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같이 공사와 특수하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또는 위원에서 배제토록 하고, 공사의 중요 경영 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 기능을 강화하고자 출석에 의한 의결만 인정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공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공사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는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(안 제5조 제2항 후단 신설).
-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공사와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배제토록 함으로써 공사경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함(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안 제14조제2항).
- 이사회의 의결요건을 신설하여 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으로써 중요한 업무사항을 서면 결의하는 관행을 제거토록 함(안 제14조 제5항 신설)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## 가. 조례안 개요

- 개정안은 서울시가 개설한 3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물공사(이하 “공사”)의 경영 투명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와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이사회 등 참여 배제, 이사회의 서면결의 관행 제거, 정관 변경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## 나. 주요사항별 검토

### 1) 정관변경의 의회 보고(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)

-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)에 따르면, 공기업의 설립 목적, 소재지, 사업내용, 임·직원, 이사회, 재무회계, 자본금 등을 규정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(법 제56조제1항·제3항).
- 개정안은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음.
- 이는 조직, 인사, 재무 등 공사 경영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관 변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 원칙에 기본적

으로 배치되고, 비회기 기간 중에는 정관 개정이 지연됨으로써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며, 타 공기업의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.

- 그러나 정관 변경에 대한 의회보고는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사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, 서울시가 설립한 제3섹터 지방공기업인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의 설립·운영 조례에도 정관을 작성·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, 김포, 여수, 의왕, 파주, 거제 등 타 지자체에서도 공기업의 정관 제정 또는 변경 시 의회의 동의, 보고, 통보 등을 이행토록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 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.

## 2) 특수 관계자의 이사회 등 참여 금지(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)

- 개정안은 공사와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사 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.
- 이사회는 사업계획 수립, 예·결산, 조직·정원,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, 사장의 경영계약 등과 같은 공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이며,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을 포함한 (비)상임이사와 감사 등 공사의 최고의사결정자를 추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- 그동안 공사는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 공사의 피감독기관인

도매시장법인의 대표를 사외이사 또는 추천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감독기관인 공사의 임원과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.

- 이에 개정안은 공사와의 거래상 갑을관계에 있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공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석해온 그동안의 부적절한 관행을 법·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.

### 3) 이사회 의결요건의 강화(안 제14조제5항)

-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요건을 신설하여 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으로써 서면결의의 관행을 제고하고자 하였음.
- 이사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출석 의결이 원칙이나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거나 의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하는 경우가 빈번이 있어 왔음.
- 최근 3년간 공사의 이사회 개최내역을 살펴보면, 매년 1-2회에 걸쳐 서면 결의가 있었으며, 추가경정예산, 수정예산 등 주로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었음.

**<표>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내역**

연도	이사회 개최 내역	
	회수	서면 결의내용
2009	8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가경정예산 편성</li> <li>- 시설현대화사업비 교부(서울시→공사)로 인한 예산 및 화장실 개보수 비용 증액</li> </ul>
2010	6(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09년도 지출예산이월 사용</li> <li>• 201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</li> <li>- 배추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 김장지원</li> </ul>
2011	9(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2년도 수정예산(안)</li> <li>- 정산회사 설립 관련 예산 삭감</li> </ul>

※ ( )는 서면결의 회수

- 이에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변경과 같이 공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서면 의결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금지시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 판단됨.
  
- 다만, 2011년 서울시의 투자·출연기관 표준정관(안)에 따라 이사회 의결요건이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어(정관 제29조) 개정안의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,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.

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**

**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**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#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,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.

제1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5조(정관)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~ 13. (생략)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6조의3에 따른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제14조(이사회)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.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</p>	<p>제5조(정관)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~ 13. (생략)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u>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6조의3에 따른다. <u>이 경우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</u></p> <p>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제14조(이사회)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.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<u>구성하되,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.</u></p> <p>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</p>

현 행	개정안
<p>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</p> <p>④ 의장은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⑦ 이사회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	<p>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</p> <p>④ 의장은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</p> <p>⑤ <u>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⑧ 이사회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